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관련 다빈도 Q&A 재 안내

(2023.9.6.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 요양기반4팀 ☎ 033)736-3685~7)

○ 공단 요양기반부-1170('23.9.4.) '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참여 안내'에 따른 다빈도 Q&A를 아래와 같이 재 안내 드리오니,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

<Q1. 보수교육 대상>

☐ 장기요양기관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. 요양보호사 자격도 가지고 있는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이 되나요?

☐ 가족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도 보수교육 대상인가요?

'2023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지침' 에 따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시범운영 지역인 대구, 경북, 부산, 울산, 경남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입니다.

※ 장기요양기관이란 시설급여(요양시설 등) 및 재가급여(방문요양·목욕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)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.

-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에 "요양보호사"로 근무 중인 자로 다른 직종으로 근무 중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
※ 간호사, 간호조무사, 사회복지사, 의료기사(물리치료사 등) 등은 근무 중인 직종에 대한 보수교육을 받습니다.

> 예시) 간호사로 근무할 경우→ 간호사 보수교육
>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경우→ 사회복지사 보수교육

-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 중이므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입니다.

<Q2.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여부>

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의무인가요?

☐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?

☐ 시범운영 참여시 혜택이 있나요?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 2(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) 개정('23.8.8.공포, '24.1.1.시행)으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법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.

-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유지,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의 의무입니다. 다만, **'23년 시범운영**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. 또한 '23년 시범 운영시 보수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는 '24년~'25년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.
- 향후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관리 방안(급여제공제한 등)을 도입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.

※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의거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, 장기요양기관 평가 시 내용 반영 예정

<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> 요약

◆ **제11조의2 (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)**

① 공단은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

②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름

1. 대상: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
2. 시간: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
3. 방법: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
4. 내용: 다음 각 목의 사항
   가. 직업윤리 및 기본 소양에 관한 사항
   나.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
   다. 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
   라. 특수 상황별 요양보호에 관한 사항
   마.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 및 권리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<Q3. 교육비>

☐ 기존의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무료로 받았는데, 보수교육은 왜 교육생이 돈을 내야합니까?

- 보수교육은 자격취득 유지기간 경과 후, 기술·기능 및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자격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제공, 보충하는 교육으로서 개인별 자격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입니다. 보수교육은 직종별 교육으로 타 직종(간호사, 사회복지사, 의료기사(물리치료사 등))의 경우에도 보수교육비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.
-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대면(현장) 8시간 기준, 36,000원의 교육비를 교육대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.

※ 대면 8시간 기준 간호사 50,000원~198,000원 간호조무사 65,000원 사회복지사 56,000원

- 다만, 방문형(방문요양·목욕)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이수에 대한 별도 지원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. (Q5 참고)

※ 요양보호사 직무교육('13~'22)은 사업주(장기요양기관의 장) 위탁 소속 직원의 역량강화교육으로, 교육비 36,110원 중 50%는 고용보험으로, 50%는 사업주(장기요양기관의 장)가 부담하였음

<Q4. 근무인정 여부>

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근무시간 인정이 되나요?

☐ 온라인 교육시간도 근무시간 인정이 되나요?

- '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' 제12조(근무인원수 산정방법)에 따라 시설형 근무자(요양원, 공동생활가정, 단기보호, 주야간보호)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.
- 다만, 해당 근무시간 인정은 대면(현장) 교육에 한정되므로, 온라인 교육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※ 방문형(방문요양·방문목욕) 근무자는 월 기준 근무시간 적용과 무관함

<Q5. 보수교육 지원 >

☐ 방문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받게 되면, 그 시간 동안 어르신을 돌보지 못하는데, 지원방법이 있나요?

-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의 80%는 방문형(방문요양·목욕) 제공자로, 방문형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이수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.

※ 시설형(요양원, 공동생활가정, 단기보호, 주야간보호)근무자는 보수교육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됨(Q4 참고)

- 향후 제도가 확정될 경우, 보수교육 시범운영에 참여한 교육 이수자에 대한 부분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.